

# 정 관

사 단 법 인 한 국 A B C 협 회

##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 (KABC)로 표기한다. <개정 2016. 2. 25>

**제2조(사무소)** 본 협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4조(목 적)** 본 협회는 다음 각항의 활동을 통해 광고거래의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신문, 잡지와 멀티미디어 등 광고매체의 수용자 크기와 분포상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사하여 회원들에게 보고서를 배포한다.
- ② 회원사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조사 연구한다.

**제5조(사 업)**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문, 잡지 등 부수 및 분포상황을 보고 받아 공사, 확인한다.
2. 멀티미디어 등 광고매체 수용자크기에 대해 공사, 확인한다.
3. 광고매체의 특색과 수용자 층에 대해 조사 연구한다.
4. 회원사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조사 연구한다.
5. 기타 제4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 제3장 회원의 종류와 자격

**제6조(회 원)** 본 협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신사회원 :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잡지회원 :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웹·모바일회원 : 동일한 도메인으로 운용하는 웹·모바일 매체를 말한다.
4. 광고주회원 : 신문, 잡지 및 웹·모바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를 말한다.
5. 광고회사회원 : 신문, 잡지 및 웹·모바일 등에 게재되는 광고업무를 취급하는 광고회사를 말한다.
6. 특별회원 : 언론, 광고관련단체, 기타 본 협회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 2. 26]

**제7조(입 회)** ① 회원의 입회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대리 수행하는 사람(이하 “등록대리인” 이라 한다.) 1명을 정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장이 입회를 승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5. 2. 26>

② 본 협회는 입회신청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입회비 및 회비)** ①본 협회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회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며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에 피선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정관, 제규정,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한다.
2. 기타 본 협회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제11조(탈 회)** ① 본 협회 회원이 제6조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탈회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제명 등)** ① 본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 정원의 2/3이상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 규정 제10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② 회원이 회비를 미납했을 때의 제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5. 2. 26>

1.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회원이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목개정 2015. 2. 26]

## 제4장 임 원

**제13조(임 원)**

- ① 본 협회 임원은 이사 5인 이상 50명 이내, 감사 3명 이내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중에는 회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둔다.

**제14조(선 출)** ① 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그 이외의 이사 및 감사는 등록대리인중 일간신문 및 매체사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광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2. 26>

③ 제2항에서 추천권을 갖는 단체는 회원들의 직전년도 청구회비 합계가 직전년도 협회 청구회비 총액의 10% 이상이거나 협회에 대한 출연금액이 협회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 26>

④ 총회에서 취임한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2. 26>

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및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감사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5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5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종료시점은 임기만료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되었을 때는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취임한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2. 26>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 및 감사가 등록대리인 직을 떠나거나 그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가 탈회하였을 때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권 한)**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관장하며,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진술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는 회장에게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고문, 자문위원) ①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본 협회에 공로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보 수) 본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회장과 상임이사 중 1인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5. 2. 26>

## 제5장 총 회

제19조(구 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의 의무를 완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종류와 개최)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소 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 7일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1/2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23조(표결권) ① 총회에서의 회원의 표결권은 각 1표로 한다.

②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그 회원이 소속하는 회사의 임직

원이나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위임으로 그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총회의 의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 2. 26>

1. 정관변경의 승인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본 협회의 운영자금 조달방법(입회비 및 회비 포함)
6. 공사제도에 관한 사항
7. 본 협회의 해산과 합병
8.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탁에 관한 사항
9. 이사회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 하는 사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27조(제척사항)** 총회의결시에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은 제척한다.

## 제6장 이사회

**제28조(구성과 개최)** ① 이사회는 본 협회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정기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개회 7일전까지 회의의안,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정족수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본인이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가 소속 회사의 임·직원을 대리자로 지명하고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대리출석 시킬 수 있다.

③ 이사회는 그 권한을 각종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의 보선
2. 정관 변경의 심의
3. 공사제도에 관한 심의
4.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5. 사업계획의 심의
6. 예산 및 결산의 심의
7. 사무국 운영 및 위원회 설치운영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운영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10. 총회 의결사항 사전심의 <개정 2015. 2. 26>
11.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의사록)** 이사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32조(총회 및 이사회 서면의결)** ① 회원 또는 이사가 부득이한 사



유로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으로 회의의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긴급하거나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장 위원회

제33조(위원회설치)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위원회규정)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2. 26>

②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26>

제36조의 2 (운영기금)

- ① 본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금을 적립한다.
- ② 운영기금은 기본재산으로 하되, 본 협회의 기타재산과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③ 운영기금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은 본 협회의 경상운영비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운영기금의 적립현황과 과실금 집행 등 기금운용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⑤ 운영기금 관리를 위한 규정의 제정, 개정과 운영기금(과실금 포함)의사용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 범위 내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계획의 변경시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2. 26>

⑥ 기타 운영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사업의 경비)** 본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기부금 및 회원의 입회비,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년2회 이상 본 협회의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6>

**제41조(잔여재산귀속)** 본 협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

되, 기본재산(운영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26>

**제42조(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26>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 2. 26>

② 제1항의 제출시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4조(법인운영규칙)** 본 협회의 법인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협회 창립회원에 한하여 본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에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법원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1995. 6. 5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1996. 3. 11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1999. 3. 9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1999. 4. 29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정관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개정)

(시행일) 본 정관은 2009. 2. 26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제15조, 제18조 개정)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① 본 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와 제1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을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③ 제12조 제2항의 제재는 제12조 제2항의 시행일 이후의 회비 미납에 대해 적용한다.

### 제2조 (회원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6조 제1호의 신문회원 중 본 정관 시행 전의 일반잡지 발행사 회원 또는 전문지발행사 회원은 다음 각호의 적용에 있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유료부수기준
2. 회비
3. 공사대상기간